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9.

여성가족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6월 28일, 이해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국회(정기회)

－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2024. 9. 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 9. 9.) 상정, 축조심사

－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2024. 9.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 제3차 여성가족위원회 (2024. 9.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이해식)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건수가 약 8배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행정수요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을 통해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삭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삭제지원의 접근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 옥 순)

현행법 제7조의3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삭제지원 비용을 지출한 경우 불법촬영물 등 관련 범죄 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현재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제5항제7호에 따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여성인

권진홍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 4월 개소한 날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1,185,459건의 삭제지원을 하였음.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에도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현재, 서울 및 경기 등 지역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2021년부터 세부사업인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사업에 내역사업으로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2024년 7월 기준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14개소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지원, 초기 긴급 삭제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도 삭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현재 구상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의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고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 산출의 정확성 문제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전무한 실정인바, 지자체의 구상권 행사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삭제비용 구상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의 접근성, 신속성 제고를 위해 피해자 지원 주체를 국가에서 지자체까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 요지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건수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필요성과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삭제 권한을 통해 접근성과 신속성 제고가 필요함(김선민 위원).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안심사소위원장 : 김한규)

이해식의원, 전진숙의원, 서지영의원, 이인선의원(2) 및 김남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